

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1. 7. 8.(금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 제1호에 의거, 제2011-17차 전원회의(2011. 3. 21)에서 의결한 ‘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’에 해당됨.

나. 의결사항

(1) 무선설비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41(서)-142)

- 국제해사기구(IMO) 등의 권고에 맞추어 해상이동업무용 초단파대(VHF)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선하고, 주파수 공용방식 간이무전기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마련한 「무선설비규칙」 및 「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」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국제규정에 맞게 해상업무용 VHF 무전기 등 기술기준 개정

- 국제해사기구(IMO*) 등의 권고에 맞추어 해상이동업무용 초단파대(VHF) 무선설비의 송신시간을 제한

* IMO(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) : 해상과 관련된 국제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로 UN 산하기관

- 해상에서 업무연락용으로 사용하는 초단파대 무전기의 전파발사가 5분 이상 지속 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기술기준에 추가

※ 선박에서 많이 사용되는 초단파 무전기의 부적정한 장시간 사용 및 오작동으로 선박 상호간, 선박과 관제센터 간 통신 두절로 해상교통 안전 저해요인으로 작용

② 주파수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무전기 기술기준 개정

- 주파수 공용방식 간이무전기는 통화지연 등 이용 불편으로 '05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어 무선국 이용자가 급감하는 추세인 반면, 주파수 지정방식 간이무전기 및 산업통신용 무전기는 주파수가 부족하여 무전기 이용이 포화 상태로 이용자 불편불만이 증가

※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전기는 1채널 당 평균 5대 사용하고 있는 반면, 주파수지정방식 간이무전기는 1채널 당 평균 3,512대, 산업통신용 무전기는 1채널 당 평균 437대 사용

- 이에 따라,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 공용방식 간이무전기용 주파수 95채널을 주파수 지정방식 간이무전기용 62채널과 산업통신용 31채널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, 기존 주파수 공용방식 간이무전기의 내용연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용기한을 2013년 말까지 사용하도록 기술기준 개정

(2) 「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」 등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41(서)-143)

- 대표번호의 부여와 이용제도 개선, 대표번호의 번호이동성 허용, 신규 이동전화서비스(LTE, MVNO)에 대한 번호부여 등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「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」 및 「시내전화,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 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」의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『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』 개정에 관한사항

- 대표번호자원 확보 및 부여, 서비스 제공 등 대표번호 제도를 개선(제11조, 제11조의2, 제20조)
- (번호자원 확보) 대표번호는 '15YY', '16YY', '18YY'의 특수번호 중에서 뒤의 두 자리('YY')가 동일한 번호를 사용토록 규정 마련
- (번호부여 기준) 사업자는 방통위로부터 부여받은 대표번호의 총 사용비율이 90% 이상인 경우에 번호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특정사업자가 대표번호를 필요이상으로 보유할 수 없도록 번호부여 단위 조정(1만개→1천개)
- (대표번호서비스 제공) 대표번호 통화료는 시내요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대표번호 요금체계 개선 근거를 마련하고, 자동응답전화(ARS)의 복잡한 이용메뉴 구조 간소화, 통화대기 시간 단축,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
- 신규 이동전화 서비스(LTE, MVNO)에서도 기존의 이동전화와 동일한 '010' 번호 부여(제3조, 제8조)
- 공통서비스 식별번호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050(개인번호), 060(전화정보), 080(수신자부담전화) 등으로 세분화(제8조)

② 『시내전화서비스,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 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』 개정에 관한사항(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)

- '시내전화서비스,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 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'을 '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'으로 명칭 변경
- 대표번호서비스 가입자가 기존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이 저렴한 사업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표번호에도 번호이동제도를 도입